

# 10.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施行令中 改正令

大統領令 第15,123號 1996. 7. 19

## 주 요 골 자

- 가. 공업배치 및 산업단지의 관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공업 배치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, 구성, 회의의 운영 및 운영세칙등에 관하여 정함(영 제7조의 2 내지 제7조의 6).
- 나. 공장설립등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·분석을 위한 정보망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를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정하고, 정보망의 위탁사업자가 수행할 업무의 내용, 자금지원등에 관하여 정함(영 제8조의 2 및 제8조의 3).
- 다.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등으로 정함(영 제19조의 2).
- 라. 수도권의 과밀억제지구안에서의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여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한도를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내에서 1천제곱미터 이내로, 창고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에서 3천제곱미터 이내로 확대하고, 과밀억제지구안의 공업지역에서는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설 및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장건축면적과 관계없이 신설 및 증설을 허용함(영 제26조 제3호 및 별표 1).
- 마. 종전에는 자연보전지역안에 있는 기타지역(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)에서는 도시형업종의 공장도 신설등이 금지되고 있었으나, 앞으로는 중소기업

에 한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으로서 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신설 및 증설을 허용함(영 별표 3).

- 바. 산업단지중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공장시설용도, 지식산업시설용도, 정보통신 산업시설용도 등으로 구분하되,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한 제조공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이상의 복합된 용도로도 이용 될 수 있도록 함(영 제43조).
- 사. 산업단지안에서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용지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임대 사업자가 관리기관에 대하여 제출할 임대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, 입주계약의 내용,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기준, 임대계약기간등을 구체적으로 정함(영 제48조의 3 및 제48조의 4).

### 개정이유

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(1995. 12. 29, 법률 제5091호)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정부의 도시권정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권의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려는 것임.